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국회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 11. 19. (총 6 쪽)

보 도 자 료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개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내일(11/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5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의견서(별첨자료2 참고)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3.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개정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기될 전반적인 노동조건 악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내수부진 등을 야기해 결국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오늘(11/19)을 시민들이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정하고 반대의사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11시 국회 앞
3.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4.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발언: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 별첨자료 2. 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제출일자: 2015. 11. 19. (목)
- 참가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I. 취지 및 배경

-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II.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조 1항 4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항 1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호) : 반대

가. 주요내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 46조 제2항 제2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절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를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조) : 반대

가.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 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항) : 반대

가. 주요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항)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주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 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Ⅲ. 결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